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18.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의4의 제목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각각 “과학조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제30조제6항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의3.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별표 6의2 중 행정사무관 “128”을 “125”로 하고, 세무주사 “241”을 “244”로 한다.

별표 10의2 중 행정사무관 “1,084”를 “1,087”로 하고, 세무주사 “4,374”를 “4,371”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11월 15일”을 “2024년 11월 15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2년 11월 15일”을 “2024년 11월 15일”로, “2022년 11월 16일”을 “2024년 11월 16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2명(세무주사 15명, 세무서기 57명)은 각각 2025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행정사무관 3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조사국) ① ~ ④ (생략)                                                                                                                                                                                                                       | 제9조(조사국) ① ~ ④ (헌행과 같음)                                                                                                         |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br>----.                                                                                                                 |
| 1. ~ 3. (생략)                                                                                                                                                                                                                              | 1. ~ 3. (헌행과 같음)                                                                                                                |
|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삭 제>                                                                                                                           |
| ⑥ ~ ⑧ (생략)                                                                                                                                                                                                                                | ⑥ ~ ⑧ (헌행과 같음)                                                                                                                  |
| 제20조(지방국제청) ① (생략)                                                                                                                                                                                                                        | 제20조(지방국제청) ① (헌행과 같음)                                                                                                          |
| ② 지방국제청에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제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제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징세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u>첨단탈세방지담당관</u>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 | ②-----<br>-----<br>-----<br>-----<br>-----<br>-----.<br>-----<br>-----<br>-----<br>-----<br>-----<br><u>과학조사담당관</u> --<br>----- |

|                                                                                                   |                                                                                       |
|---------------------------------------------------------------------------------------------------|---------------------------------------------------------------------------------------|
| 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 -----<br>-----<br>-----<br>-----<br>-----.                                            |
| 제21조의4(첨단탈세방지담당관) ① <u>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u>과학조사담당관</u> -----.                                               |
| ② <u>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u>                                                    | ② <u>과학조사담당관</u>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u>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u>                                                                  | <u>&lt;삭 제&gt;</u>                                                                    |
| 5. ~ 9. (생략)                                                                                      | 5. ~ 9. (현행과 같음)                                                                      |
|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 ④ (생략)                                                                        |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 ⑤ -----.                                                                              |
| 1. ~ 14. (생략)                                                                                     | 1. ~ 14.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15. <u>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 등의 집행계획 수립,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u> |

|                                                                                                       |                                                                     |
|-------------------------------------------------------------------------------------------------------|---------------------------------------------------------------------|
| ⑥ ~ ⑧ (생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30조(세무서) ① ~ ④ (생략)                                                                                  | 제30조(세무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삭 제</u>                                                                                          | ⑥-----.                                                             |
| ⑥ <u>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 ⑥-----.                                                             |
| 1. ~ 11의2. (생략)                                                                                       | 1. ~ 11의2. (현행과 같음)                                                 |
| 11의3. <u>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에 관한 업무</u>                                                                    | 11의3. <u>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u> |
| 11의4. ~ 32. (생략)                                                                                      | 11의4. ~ 32. (현행과 같음)                                                |
| ⑦ ~ ⑫ (생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6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u>&lt;삭 제&gt;</u>                                                  |
|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 기획재정부령 제757호 국세청과                                                   |



## 신·구정원대비표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128</u> | <u>125</u> | -3  |
| ·     | ·          | ·          |     |
| ·     | ·          | ·          |     |
| 세무주사  | <u>241</u> | <u>244</u> | +3  |
| ·     | ·          | ·          |     |
| ·     |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1,084</u> | <u>1,087</u> | +3  |
| ·     | ·            | ·            |     |
| ·     | ·            | ·            |     |
| 세무주사  | <u>4,374</u> | <u>4,371</u> | -3  |
| ·     | ·            | ·            |     |
| ·     | ·            | ·            |     |